

투자위험등급 : 4등급[보통 위험]						BNK자산운용(주) 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매우 높은 위험	2 높은 위험	3 다소 높은 위험	4 보통 위험	5 낮은 위험	6 매우 낮은 위험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운용전환일부터)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운용전환일부터)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 집합투자업자 명칭 : BNK자산운용(주)
- 판 매 회 사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작 성 기 준 일 : 2026년 06월 01일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6년 07월 21일
-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
-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9일(수)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청구 또는 취소/정정은 이 투자신탁 모집기간 내 판매회사의 판매기간(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6910-1100 / 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 및 협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모집기간동안 모집(판매)된 금액이 20억원 이하(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납입한 투자금액을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 투자신탁은 배당성향이 높은 고배당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에 투자하며, 일부 종목의 경우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금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함

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배당 정책에 따라 일부 종목의 경우 배당금액을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자를 확정합니다. 이 때 이 투자신탁이 배당기준일 전에 운용전환 되는 경우,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해당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목표기준가격(Class A 집합투자증권 기준 수정기준 가격 1,060원)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 날부터 주식 관련 자산 등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일(목표기준가격 이상을 최초로 달성한날로부터 5영업일)에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선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Class A, Class A-e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자가 실제로 수취하는 수익률은 투자원금에서 선취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달성한 누적수익률과 투자자의 투자원금 기준으로 계산된 수익률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으로서 사전에 정하여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목표기준가격을 반드시 달성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채권형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됩니다.

13. 이 집합투자기구는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집합투자기구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전환과정에서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시장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매매 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14.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6년 06월 01일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펀드코드: EW954]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BNK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 도를 감안하여 4등급 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시에는 국내채권 에 신탁재산의 50% 이상 을 투자하고, 주식에 30% 이하 를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국내 채권에 60% 이상 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목표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운용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 위험, 목표기준가격 적용 집합투자증권 변경에 따른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 요약정보는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만, 운용전환일부터는 주식관련 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최초로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1,060원) 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누적된 수익 보전 및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목표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60원을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마. Class C-P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바. Class C-P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사. Class C-P2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아. Class C-P2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만, 종류 C-F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합니다.
	수정기준가격	집합투자계약 제29조의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에 의한 정기결산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의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운용전환	목표기준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이 최초로 목표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용전환일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영업일을 말합니다.
	[투자전략] · 고배당 관련 주식에 투자 : 배당의 안전성, 지속가능성 위주로 배당성향, 재무건전성 등을 파악하여 투자	

	· 주주가치 투자 : 자사주 보유 또는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 및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지배구조 개선 관련 기업에 투자 · 국공채 및 우량채권 투자 : 국공채 및 우량 채권 투자를 통해 유동성 관리 및 안정적인 이자수의 추구 목표수익률 6% 달성 시, 유동성 및 투명성이 높은 단기채에 투자하여 운용의 안정성과 수익 추구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분류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단위형(추가납입불가능),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기간	총보수	판매 보수	총보수 ·비용	동종 유형 총보수	1년	2년	3년
	수수료선취- 오프라인형 (A)	납입금액의 1.0% 이내	운용전환일 이전	0.640	0.100	0.640	0.770	165	232	302
			운용전환일부터	0.130	0.010	0.130				
	수수료미징 구- 오프라인형 (C)	없음	운용전환일 이전	1.240	0.700	1.240	1.150	128	259	396
			운용전환일부터	0.220	0.100	0.220				
	수수료선취- 온라인형 (Ae)	납입금액의 0.5% 이내	운용전환일 이전	0.590	0.050	0.590	0.560	110	173	238
			운용전환일부터	0.125	0.005	0.125				
	수수료미징 구- 온라인형 (Ce)	없음	운용전환일 이전	0.890	0.350	0.890	0.730	92	186	285
			운용전환일부터	0.170	0.050	0.170				
	(주1)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합성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를 가정하여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적용하였습니다. (주2) 종류A형과 종류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운용전문 인력	[채권]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변준	1977	책임 (수석매니저)	17개	10,681억	-	-	15.92	10.46	18년 6개월
	왕희지	1995	부책임 (매니저)	16개	4,654억	-	-	15.92	10.46	7년 5개월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변준-0개, 0억 / 왕희지-0개 0억]									
[주식]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동훈	1989	책임 (매니저)	18개	3,688억	41.90	22.56	15.92	10.46	6년
박지은	1985	부책임 (수석매니저)	6개	1,183억	-	-	15.92	10.46	10년 7개월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조동훈-2개 231억 / 박지은-0개 0억]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 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주식 및 채권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시장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개별 기업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식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하여 개별 주식가격의 등락을 초래할 가능성과 개별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의 변화에 따라 주식의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해당 시장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익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위험	보유하고 있는 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관련 자산 등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시장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기준 수정기준가격 1,060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목표기준가격 적용 집합투자증권 변경에 따른 위험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한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운용전환 시 수익률은 A 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만기 위험	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 달성이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1,000원)으로 매입										
환매방법	운용전환일 이전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적용, 5영업일 대금 지급									
	운용전환일부터	· 17시 이전 : 3영업일 기준가 적용, 3영업일 대금 지급 · 17시 경과 후 : 4영업일 기준가 적용, 4영업일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없음										
기준가격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전일 집합투자지구 산출총액-부채총액)/전일 집합투자지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지구	집합투자지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지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BNK자산운용(주) (대표번호 : 02-6910-11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bnkasset.co.kr)										
모집기간	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9일(수)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2029년 07월 30일)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함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용 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운용전환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 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가능하며, 매입청구 또는 취소/정정은 해당 모집기간 내 판매회사의 판매 기간(영업시간)까지만 가능 ※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20억)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효력발생일	2026년 07월 21일	모집 매출총액	10조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지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지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table><tr><th colspan="2">종류(Class)</th><th>집합투자기구의 특징</th></tr><tr><td rowspan="2">판매 수수료</td><td>수수료 선취(A)</td><td>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td></tr><tr><td>수수료 미징구(C)</td><td>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td></tr></table>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취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약 1년 6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지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기타	펀드(F)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bnkasset.co.kr)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기준)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제6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붙임] 용어풀이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W954)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W955	EW956	EW957	EW958	EW959
(클래스) 종류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W961	EW962	EW964	EW966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혼합채권형), 운용전환일부터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중도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단위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하지 아니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표시 :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 해당사항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붙임] 용어풀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이 투자신탁은 1좌(=1원) 단위로 10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단위형 집합투자기구로 최초설정일 이후 추가설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20억)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 2026년 07월 20일(월) ~ 2026년 07월 29일(수) (판매회사에 따라 모집기간 단축 가능)

다만,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청구 또는 취소/정정은 이 투자신탁 모집기간 내 판매회사의 판매기간(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2) 모집장소 : 각 판매회사 본·지점 및 온라인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모집방법 및 절차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 또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모집

주1) 모집(판매)된 금액이 20억원 이하(선취판매수수료 포함 금액)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입한 투자금액은 판매회사를 통해 돌려받게 됩니다.

주2)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W954)				
(클래스) 종류	Class A	Class A-e	Class C	Class C-e	Class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W955	EW956	EW957	EW958	EW959
(클래스) 종류	Class C-P	Class C-Pe	Class C-P2	Class C-P2e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EW961	EW962	EW964	EW966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26.07.01	최초 효력발생
2026.07.21	오기 정정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3년간(2029년 07월 30일)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투자신탁 계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신탁계약의 해지시에는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
2.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운용전환일부터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60원을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마. Class C-P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바. Class C-P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	--

	사. Class C-P2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아. Class C-P2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만, 종류 C-F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합니다.
수정기준가격	집합투자규약 제29조의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에 의한 정기결산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의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운용전환	목표기준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이 최초로 목표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용전환일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영업일을 말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BNK자산운용(주)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대표전화 : 02-6910-1100)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26.06.01 기준)

① 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변준	1977	책임 (수석매니저)	17 개	10,681억	-	-	15.92	10.46	18년 6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AIA생명보험 자산운용부(1년) - 웰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년 6개월) - AIA생명보험 자산운용부(1년) - KB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3년 1개월) - 알파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1년 8개월) - 키움증권 신탁팀(1년 4개월) -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3년 1개월) -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채권운용1팀(4년 2개월) - BNK자산운용 채권운용2팀장(2025.08~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조동훈	1989	책임 (매니저)	18 개	3,688억	41.90	22.56	15.92	10.46	6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브레인자산운용 에쿼티운용본부(3년) - BNK자산운용 주식운용3팀장(2019.03~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변준-0개, 0억 / 조동훈-2개, 231억]

-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②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없음

③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왕희지	1995	부책임 (매니저)	16개	4,654억	-	-	15.92	10.46	7년 5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한국투자신탁운용 FI 운용본부(3년 8개월) - BNK 자산운용 채권운용1팀(2022.08~현재)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공모펀드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혼합채권형) (%)				운용 경력년수 (공사모 포함)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박지은	1985	부책임 (수석매니저)	6개	1,183억	-	-	15.92	10.46	10년 7개월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메리츠증권 리서치(3년 6개월) - 칸서스자산운용 리서치(7개월) - 우리자산운용 주식운용(6년 1개월) - BNK 자산운용 주식운용2팀장(2021.11 ~ 현재)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왕희지-0개, 0억 / 박지은-0개, 0억]

-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④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없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혼합채권형)[다만, 운용전환일부터 증권(채권형)], 개방형, 단위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

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래스 (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주1) 각 종류별로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만, 운용전환일부터는 주식관련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운용전환일 이후에는 국내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설정일 이후 최초로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1,060원) 이상 달성한 경우 달성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영업일에 채권형으로 전환 후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 → Class A-e → Class C → Class C-e → Class C-P → Class C-Pe → Class C-P2 → Class C-P2e → Class C-F 수익증권 순으로 순차적 적용)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회사"라 한다)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채권	50% 이상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

			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전자단기사채 등(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인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u><운용전환일부터></u>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합니다.
②	주식	30%이하. 또한 주식 및 주식 관련 집 합투자증권에 의 투자 총 합계액은 투 자신탁 자산 총액의 30% 이하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또는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에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이하 “주식”이라 한다) <u><운용전환일부터></u>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로 합니다.
③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1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④	자산유동화 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집합투자증권 등	30% 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다만, 운용전환일부터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한한다. <u><운용전환일부터></u> 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국내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한다.
⑥	환매조건부 매도	50% 이하	환매조건부매도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⑦	증권의 대여	50% 이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은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합니다.
⑧	투자증권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합니다.
⑨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 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것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재산 자산총액에 대비하여 산출

- 위의 집합투자계약 제2조제4호 및 ①~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4호 및 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①~⑤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이 투자신탁의 수정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1월간

나.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내용
①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및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③	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

	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④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⑤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가. 투자대상 ⑥~⑧, 위의 나. 투자제한 ②~④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 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위의 나. 투자제한 ②의 본문, ③의 가목 및 나목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가. 투자대상”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해당자산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대상 ②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용전환일부터도 가. 투자대상 ②의 투자신탁재산이 주식의 거래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투자비율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기본 운용전략

- 이 투자신탁은 최초설정일부터 운용전환일 전까지 국내 채권에 50% 이상, 국내 주식에 30% 이하 투자하여 자본차익과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주식에의 투자는 고배당 & 자사주 & 집중투표제 관련 기업 주식에 투자, 일반주주가치 상승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의 변화 방향성에 투자하고, 채권에의 투자는 국공채 및 우량 채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유동성 관리 및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하여 목표기준가격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여 운용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관련자산을 전부 매도하고, 국내 MMF 및 단기채(국채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 투자신탁 설정일 이후 최초로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1,060원) 이상 달성한 경우에는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목표기준가격	이 투자신탁의 Class A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을 기준으로 1,060원을 말합니다. 다만,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합니다. 가.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A-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나. Class A-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 Class C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라. Class C-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마. Class C-P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바. Class C-P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사. Class C-P2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P2e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아. Class C-P2e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Class C-F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 다만, 종류 C-F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전부 환매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합니다.
수정기준가격	집합투자계약 제29조의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에 의한 정기결산을 반영하지 않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의 기준가격을 말합니다.
운용전환	목표기준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정기준가격이 최초로 목표기준가격 이상인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용전환일	이 투자신탁이 최초로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5영업일을 말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한 이후 주식 관련 자산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 이후 시장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정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을 하회하더라도 운용전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운용전략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전까지>

[채권 전략]

1) 국공채 및 우량채권에 70% 이상 투자하여 유동성 관리 및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 채권은 AA- 등급 이상, 단기사채 및 기업어음은 A1 등급 이상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풍부한 포트폴리

오 구성

- 금리변동 위험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이자수익 추구

2) 포트폴리오 전략

- 국내외 경기 전망 및 통화정책, 투자환경 등에 대한 전망에 기반을 둔 듀레이션 전략 수립
- 펀더멘탈 분석을 통해 저평가된 우량 크레딧 채권 투자
- 만기별/섹터별 상대가치 분석을 통한 다양한 초과 수익원 발굴

전략구분	세부전략
듀레이션 전략	- Macro 분석, 단기 자금 시장, 채권 시장 분석을 통해 시장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Duration 수준 결정 - Forward곡선을 통해서 금리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3D(매크로, 정책, 밸류에이션) 분석으로 금리레벨 예측
크레딧 전략	- 일반기업 / 여신전문금융업체 / 증권사 / 카드사 각 섹터별로 구분하여 분석 - 섹터별 핵심 재무적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 - 기업별 시계열상의 재무지표 변화 추이 분석을 통해 신용등급 변동 가능성 높은 기업 선별
상대가치 전략	- 현/선물 스프레드 분석 - 동종채권 상대가치분석: NSS model ^{주1)}에 근거한 고평가/저평가 분석 - 이종채권 상대가치 분석: 수익률 곡선 평균회귀를 가정하여 스프레드 분석 - BEI trading ^{주2)}: 자체 물가 추정 모형 활용 - Repo 전략: 단기구간 수익률 곡선 spread(Rolling effect) 분석
Yield Curve	- 현재의 수익률 곡선 유지 또는 단기 금리 수준 유지 가정하에서 수익률 곡선 Spread 폭 극대화 구간 활용(Rolling effect) - 동종채권 장단기 금리 차이를 활용 - 듀레이션 변화 없음을 기반으로 저평가 만기구간과 고평가 구간을 조합

주1) NSS (Nelson-Siegel-Svensson) model: 금리 수준(Level), 장단기 금리차 (Slope), 수익률 곡선의 형태 (Curvature)를 주요 변수로 사용해서 수익률 곡선을 추정하는 모형으로 시장 금리와 모델에서 산출된 금리와의 괴리를 찾아내어 저평가/고평가된 종목을 발굴하는 투자전략에 활용

주2) BEI (Breakeven Inflation, 기대인플레이션) Trading: 물가연동국채와 일반 명목국채 수익률 사이의 차이를 활용하는 전략으로 향후 물가가 예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물가연동국채 매수 + 명목국채 매도 전략,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명목국채 매수 + 물가연동국채 매도 전략 실행

[운용전환일 이전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구분	투자대상(예시)	신용등급
채권	공사채/특수은행채	AAA
	여전채/회사채	AA-

* 기준일: 2026.05.31

* 상기 포트폴리오 예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대상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식 전략]

1) 고배당주 투자 전략

- 현금흐름 및 보유 현금여력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주주환원 강화 가능한 종목 발굴
- 정유화학, 유틸리티, 보험 등 이익에 따른 배당 등락이 심한 업종은 Bottom-up 리서치 강화
- 일정 비율 이상의 고배당주 투자 비중 유지를 통해 배당 시즌 배당 수취를 통한 초과수익 달성 노력
- 편입 및 편출 시점에는 시가배당률 및 DPS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사결정

구분	Check List	참 조
수익성	Macro환경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이익이 아닌 정상적인 이익	Sustainable ROE

	창출 능력을 감안	
안정성	지속적인 배당을 이루기 위한 토대가 되는 현금 창출 능력 감안	CFO/Sales
	타인자본의 의존도와 재무구조의 건전성 감안	부채비율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 감안	이자보상 배율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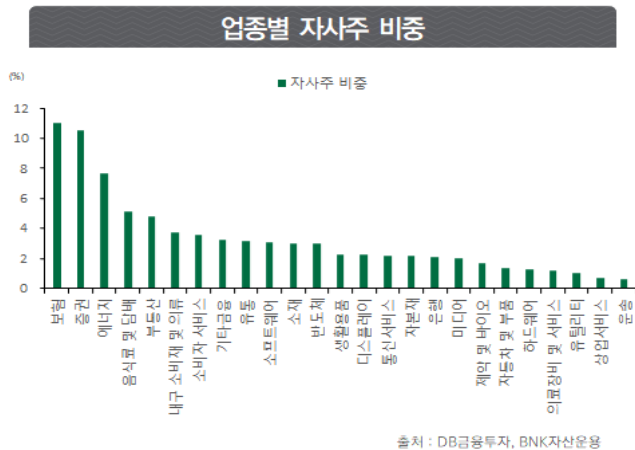
2) 주주가치 제고 기업에 집중 투자

-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및 기타 주주가치 제고 활동이 강화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 실행
- 특히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 수 감소에 기여, 자사주 소각은 발행주식 수 감소에 기여
- 추가적인 주주가치 제고 활동까지 포함하여 기업가치 상승 가능 기업을 선별 및 투자

주주가치 제고 방법	기대효과
자사주 매입	- 자사주 매입 기간 긍정적인 수급 효과 발생 - 자사주 매입 이후 해당 자사주를 다양한 기업가치 증대 방안으로 활용 가능
자사주 소각	- 자사주 소각 시, 기존 보유 자사주를 시장에 재매각할 수 있다는 우려 희석 - 향후 추가 자사주 매입 시 소각 가능성을 높여 주주환원정책 신뢰성 향상
기타 (집중투표제 등)	- 주주가치와 위배되는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 -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사익 추구를 제한하고,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2-1) 자사주 매입 & 자사주 비율 높은 기업

-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기보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바탕으로 추가 자사주 매입이 예상되는 기업 투자
-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 투자 시, 향후 자사주 활용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가능성
- 투자 종목 선별 시 기업의 기업가치 제고방안 및 주주환원정책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투자 시 주요 참조지표		
주주환원	수익성	Sustainable ROE* Macro환경 변화 등에 따른 일시적 이익 아닌 정상적인 이익창출 능력을 감안
	CFO/Sales**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 창출 능력 검증 → 향후 자사주 매입 가능
	자사주 비율	상장주식 수 대비 자기주식 수 보유 비율
	총주주환원율	배당성향을 감안한 시가배당률과 자사주 매입 및 소각비율을 더한 지표

* ROE : 자기자본이익률

** CFO / Sales (cash flow for operation) : 영업활동현금흐름 / 매출액

※ 상기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통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2) 자사주 소각 가능성

- 밸류업 정책 시행 이후 자사주 소각이 확대 → 이를 투자 아이디어로 활용하여 투자 가능
-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스크리닝하여 투자 대상으로 검토

- 과거 자사주 소각 사례가 있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내 자사주 소각 목표가 있는 경우 등 확인 필요

2-3) 집중투표제 도입 등 일반주주 권익 강화

- 대주주 지분율이 낮거나, 일반주주 권리 강화 필요성이 있는 기업들을 면밀하게 스크리닝
- 정량화된 수치보다는, ESG 및 주주 권익 보호의 관점에서 투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자본시장이 보다 선진화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 아이디어 도출

[운용전환일 이전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고배당				주주가치			
배당수익률이 아닌, 배당매력도가 높은 기업				기업가치 제고방안 및 주주환원정책 강화 기업			
- 배당이익과 자본이익을 감안한 총수익 관점에서 종목 선정 - 실적 및 배당성향 상향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가능 종목 선정				- 자사주 매입/소각 및 기타 주주가치 제고 활동이 강화되는 기업 - 집중 투표제 도입 등 일반주주 권익 강화가 가능한 기업			
구분	종목명	시가총액(십억원)	비고	구분	종목명	시가총액(십억원)	비고
1	현대차	148,040	고배당	1	삼성전자	1,853,270	주주가치
2	현대모비스	69,683	고배당	2	SK스퀘어	162,705	주주가치
3	KB금융	56,151	고배당	3	셀트리온	42,847	주주가치
4	하나금융지주	31,580	고배당	4	두산	31,934	주주가치
5	삼성화재	25,404	고배당	5	한미약품	6,290	주주가치
6	HD현대	21,921	고배당	6	NC	6,237	주주가치
7	대덕전자	9,434	고배당	7	신세계	4,864	주주가치
8	코웨이	6,369	고배당	8	CJ	4,718	주주가치
9	한국카본	1,667	고배당	9	롯데쇼핑	4,178	주주가치
10	씨젠	1,588	고배당	10	팬오션	2,935	주주가치

* 자료: Quantwise, 2026.05.31 기준

* 상기 포트폴리오 예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대상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수정기준가격이 목표기준가격(1,060원)에 도달하여 운용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목표 수익 유지 및 원활한 환매 대응을 위하여 펀드를 [채권혼합형]에서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식을 매도한 후 유동성이 높은 국내 MMF 및 단기채 등에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 상기 제시된 전략은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일부터 국내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 예시]

종류	종목명(예시)
채권 (국고채)	국고02625-2703(25-1)
채권 (통안채)	통안02700-2703-01

* 기준일: 2026.05.31

* 상기 포트폴리오 예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 가능한 대상자산의 일부를 제시한 예시로 이 투자신탁이 상기에 열거한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시장상황 및 운용전략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의 판단으로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해당사항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아 운용실적 비교를 위한 별도의 비교지수를 지정하고 있

지 아니합니다. 다만,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발견하거나 또는 비교지수 산출기관이 투자전략에 부합하는 인덱스를 산출할 경우 비교지수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 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 관리

투자와 관련된 주요 위험요인을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시장위험은 집합투자재산의 유형별 시장위험지표를 통해 측정·관리합니다.
- 신용위험은 개별자산의 신용등급, 재무지표 등으로 측정하며, 투자유니버스를 통해 부적격 종목의 편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유동성위험은 환매 규모, 유동자금 현황 및 개별 자산의 거래량 등으로 집합투자재산의 유동성을 측정·관리합니다. 또한 투자유니버스를 통해 저유동성 종목의 편입을 사전에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리스크관리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이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관리위원회는 이 투자신탁의 벤치마크와 위험관리 지표 등 운용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설정할 수 있으며, 운용부서는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관련 위험관리]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유동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환매 및 상환연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집합투자계약의 환매 연기 및 상환금 지급에 관한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급변하여 펀드 내 편입 자산에 대한 비상 위기대응이 필요할 경우, 당사 내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기발생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운용담당부서는 물론, 필요시 전사 차원의 대응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1단계 (주의)	• 리스크관리팀 및 운용본부 상호 점검 및 통보 • 운용본부는 시장급변에 따른 위탁자산 영향을 점검 - 위기상황으로 판단시에는 2단계 절차를 진행
2단계 (경계)	• 관련 운용본부는 지체없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위기점검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경영진에게 보고해야 한다. - 발생현황, 원인분석, 향후 전망, 관련부서 협조사항 - 집합투자재산의 영향 및 대응방안 등
3단계 (위기)	•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한 전사적 대응방안을 수립한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은 국내채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하고, 주식에 30% 이하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혼합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사전에 정한 목표기준가격(1,060원)에 도달한 경우 주식관련자산을 전부 매도하여 채권형 투자신탁으로 운용이 전환되는 것으로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전략 등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본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자산을 국내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신탁은 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해당 시장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투자신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의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등 가격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등에 일부 투자하므로, 국내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인 국내 주식 등의 가격 하락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의 가치도 일정수준 하락하게 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자산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 등 가격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의 잔존만기가 길어질 경우 해당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자산을 정기예금, RP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율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대여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자산을 증권대여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투자자산매매가 원

	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의해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 위험	이 투자신탁은 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증권차입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차입 자산을 공매도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 인해 그 차액만큼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액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특정주식 집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고배당주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의 성과와는 크게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투자신탁보다 더 높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은 배당주에 투자하며, 일부 종목의 경우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 배당금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배당정책에 따라 일부 종목의 경우 배당금액을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지를 확정합니다. 이 때 이 투자신탁이 배당기준일 전에 운용전환 되는 경우, 운용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 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해당 배당금수령에 대한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대상 기업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목표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 변경에 따른 위험	Class A 수익증권이 설정되지 않거나 혹은 전부환매가 될 경우에는 목표기준가격 적용 수익증권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lass A → Class A-e → Class C → Class C-e → Class C-P → Class C-Pe → Class C-P2 → Class C-P2e → Class C-F 수익증권 순으로 순차적 적용)이 경우 투자자가 기대할 수 있는 목표전환 시 수익률은 Class A 수익증권의 목표기준가격을 적용한 경우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표전환 미달성 위험	이 투자신탁은 채권,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사전에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운용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할 경우 투자전략을 변경하는 전환형 투자신탁으로서, 목표기준가격 달성 시 투자신탁의 전환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또는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전환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관련 자산 등을 매매하는 날의 시장 상황(목표기준가격 달성일로부터 시장의 급격한 상승 또는 하락, 매매비용 등)에 따라 실현이익이 전환 기준이 되는 목표기준가격(Class A 집합투자증권 기준 수정기준가격 1,060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손실이 난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펀드만기위험	이 투자신탁은 사전에 정해진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운용전환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목표기준가격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기간까지 운용하고 상환되므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상환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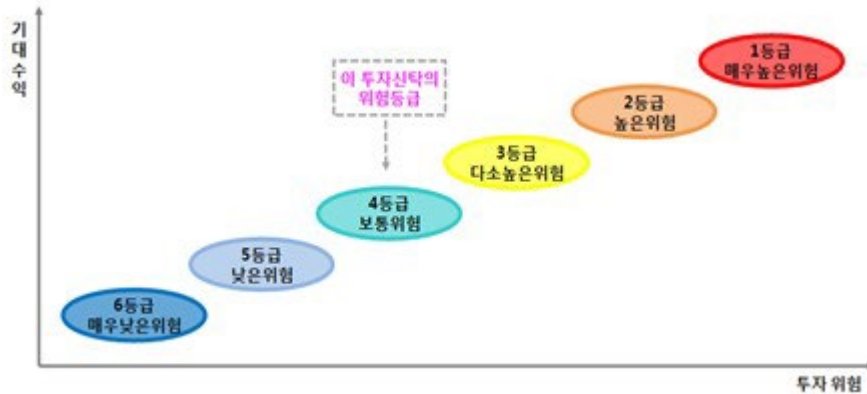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초기 또는 환매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편입 및 분산투자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이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 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오퍼레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 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 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대금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의 '나. 환매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래중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산정 위험	시장가격이 없는 자산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공정가액 산정 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자산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정가액이 시장가치와 정확히 상응한다고 보장할 수 없고 정확한 가치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설정취소위험	이 투자신탁은 모집(판매)이 예정된 규모 이하인 경우에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집합투자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후 3년이 미경과한 펀드의 경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투자신탁 위험등급을 매우 높은 위험(1등급)에서 매우 낮은 위험(6등급)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채권에 50% 이상, 국내 주식에 30% 이하 투자하여 자본차

익과 수익 추구 상품으로 6단계의 투자위험등급 중 **4등급(보통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운용전환일부터**는 국내 MMF 및 단기채(국채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여 주로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므로 6단계의 투자자위험등급 중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국내 경제여건 변화와 해외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국내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으로 인한 투자원본손실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여 다소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상기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추후 이 투자신탁의 결산시마다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BNK자산운용 투자위험 등급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중위험자산”은 채권(BBB- 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헤지여부, 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정함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은 추가설정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계약 제32조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범위 내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2)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Class)	한글 표기	가입자격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가입제한 없음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 제9조제5항의 전문투자자, 기타 내국법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및 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개인형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 자로서 온라인 전용 수익증권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하며,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당해 종류별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정정은 이 투자신탁 모집기간 내 해당 판매회사의 판매기간(영업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 또는 판매회사 인터넷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전까지>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D+4)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영업일 (D)	2영업일 (D+1)	3영업일 (D+2)	4영업일 (D+3)	5영업일 (D+4)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 지급

<운용전환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4영업일(D+3)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영업일 (D)	2영업일 (D+1)	3영업일 (D+2)	4영업일 (D+3)
17시 이전	환매청구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 지급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			기준가격적용 환매대금 지급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취소·정정은 환매청구일 17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2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다만, 운용전환일부터는 이 일정한 날의 전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한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법 시행령 제256조)

- ①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또는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	-	○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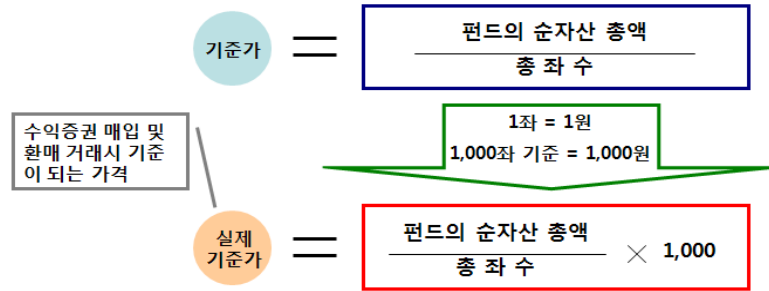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방법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http://www.bnkasset.co.kr)·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http://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치(NAV)는 1주(Share)당 순자산가치로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집합투자기구의 발행된 총주식수로 나누어 달러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 산정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가격정보 등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발표하는 가격
④장외파생상품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평가방법에 따라 계산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며,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의 발행/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에 의하여 평가
⑤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⑥비상장채권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⑦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⑨해외주식	평가기준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⑩외화표시 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⑪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은 그 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최근일 최종시가로 평가한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집합투자재산 평가담당 임원
: 위원 - 집합투자재산 운용담당 임원, 준법감시인, 평가담당팀장, 운용담당팀장, 리스크관리담당팀장, 컴플라이언스담당팀장
- 위원회 업무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기준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도채권 등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출자전환주식 등 시장매각에 제한이 있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의 설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등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Class)	한글 표기	수수료율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A	수수료선취-오프라인	납입금액의 1.00% 이내	-	없음
A-e	수수료선취-온라인	납입금액의 0.50% 이내	-	
C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	-	
C-e	수수료미징구-온라인	-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차등 적용의 관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 및 각 판매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전]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 투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동종 유형	합성 총 보수 및	증권 거래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업자			관리			및 비용	총 보수	비용(피 투자 집 합투자 기구 보 수포함)	비용
지급 시기	-	매 3개월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500	0.10	0.028	0.012	0.640	-	0.640	0.770	0.640	-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05			0.590	-	0.590	0.560	0.590	-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70			1.240	-	1.240	1.150	1.240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35			0.890	-	0.890	0.730	0.890	-
C-F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0.03			0.570	-	0.570	-	0.570	-
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		0.40			0.940	-	0.940	-	0.940	-
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연금		0.20			0.740	-	0.740	-	0.740	-
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0.30			0.840	-	0.840	-	0.840	-
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연금		0.15			0.690	-	0.690	-	0.690	-

[운용전환일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구분 (Class)	한글 표기	지급비율 (연간, 순자산총액의 %)									
		집합 투자 업자	판매 회사	신탁 업자	일반 사무 관리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및 비용	동종 유형 총 보수	합성 총 보수 및 비용(피 투자 집 합투자 기구 보 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지급 시기	-	매 3개월				-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A	수수료선취- 오프라인	0.100	0.010	0.01	0.01	0.130	-	0.130	-	0.130	-
A-e	수수료선취- 온라인		0.005			0.125	-	0.125	-	0.125	-
C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0.100			0.220	-	0.220	-	0.220	-
C-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0.050			0.170	-	0.170	-	0.170	-

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펀드, 전문투자자 및 기관	0.001			0.121	-	0.121	-	0.121	-
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0.060			0.180	-	0.180	-	0.180	-
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0.030			0.150	-	0.150	-	0.150	-
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0.070			0.190	-	0.190	-	0.190	-
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0.035			0.155	-	0.155	-	0.155	-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위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기타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위탁원결제보수, 채권평가보수, 부동산감정평가보수,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지수사용료 등
-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최초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장 또는 등록주식 매매수수료, 장내파생상품 매매수수료, 장외 파생상품매매수수료, 현금 중개수수료, 대차 또는 대주, Repo 거래 중개수수료, 해외자산(주식, 채권, 선물, 장외파생, 기타 Forward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1)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되는 경우: 투자기간 1년

구분(Class)		6개월	1년	-	-	-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83	139	-	-	-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5	86	-	-	-
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64	75	-	-	-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혼합)
 (운용전환일부터) BNK고배당주주가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제2호(채권)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6	54	-	-	-
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29	35	-	-	-
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8	57	-	-	-
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8	46	-	-	-
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43	53	-	-	-
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6	43	-	-	-

2)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운용전환되는 경우 : 투자기간 1년 6개월

구분(Class)		1년	1년 6개월	-	-	-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65	222	-	-	-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10	142	-	-	-
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128	139	-	-	-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2	100	-	-	-
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59	65	-	-	-
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97	106	-	-	-
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6	84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7	96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1	79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3)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투자기간 3년

구분(Class)		1년	1년 6개월	2년	2년 6개월	3년
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5	198	232	267	30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A-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10	141	173	205	23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27	193	259	327	396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1	139	186	236	2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f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58	89	119	151	1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96	146	197	249	30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P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6	115	155	196	2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P2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86	131	176	222	269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C-P2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71	108	144	183	2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총보수·비용 포함)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투자수익률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률로 가정하여 일정한 비율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익금은 모두 채투자하며 판매수수료(선취판매수수료 - Class A: 1.0%, Class A-e: 0.5% 가정)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전 투자수익률: 6% 가정

나. 운용전환일로부터 투자신탁 해지일까지 투자수익률: 1% 가정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까지 목표기준가격을 달성하지 못하여 전환이 되지 않는 경우 투자수익률: 5% 가정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 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부터 매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일이 속하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 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규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규약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부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투자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의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및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lass C-P, C-Pe 가입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이라 한다)
수령요건	55세 이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납입금액] -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가능(2024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의 질병·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연금계좌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 ~ 3.3%(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 **Class C-P2, C-P2e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구분	주요 내용
세액공제	-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2%에 대해 세액공제.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5%에 대해 세액공제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입니다.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 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과세체계 다양성	퇴직연금 수령방법(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가.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기준)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 최초설정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제 4 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2026.06.01 기준)

회사명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32 여의도파이낸스타워 21층 (연락처 : 02-6910-1100, www.bnkasset.co.kr)
회사 연혁	2008.07 GS자산운용(주) 설립 2015.07 자본금 증자(+40.5억) 및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사명 변경 2017.12 BNK금융지주 100% 자회사 편입 및 자본금 증자(+30억) 2018.11 자본금 증자(+30억) 2020.08 자본금 증자(+30억) 2021.05 자본금 증자(+156.25억)
자본금	416.75억
주요 주주현황	BNK금융지주(100%)
이해관계인	한국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30% 이상을 보관 · 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나. 주요업무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 / 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 / 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4.12.31	'25.12.31	항 목	'24.01.01~ '24.12.31	'25.01.01~ '25.12.31
현금및예치금	4,046	5,398	영업수익	26,589	33,313
유가증권	169,120	187,543			
대출채권	25	31			
유형자산	1,527	4,858	영업비용	17,348	19,862
기타자산	4,968	6,078			
자산총계	179,686	203,908	영업이익	9,241	13,451
예수부채	220	192	영업외수익	2,303	7,675
기타부채	5,905	14,172			
부채총계	6,125	14,364	영업외비용	196	54
자본금	41,675	41,675			
자본잉여금	109,079	109,079			
이익잉여금	22,807	38,790	경상이익	11,348	21,072
자본조정	0	0	법인세 등	2,738	5,089
기타포괄손익 누계액	0	0	당기순이익	8,610	15,983
자본총계	173,561	189,544			

라. 운용자산 규모(2026.06.01 기준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 자산	혼합 자산	단기 금융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	파생형					
수탁고	5,852	28,567	2,111	0	712	1,510	3,521	0	1,769	40,309	84,351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 02-2073-7114
회 사 연 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kbstar.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여유자금 운용이자 수입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3)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

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 02-2168-0400
회 사 연 혁 등 (홈 페이지 참조)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3)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한국자산평가	NICE P&I	KIS채권평가	에프앤자산평가	이지자산평가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 02-2251-1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 02-398-39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 02-785-1410
회사연혁등 (홈 페이지 참조)	www.koreaa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www.egap.co.kr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 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투자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단, 집합투자규약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법」제363조제1항 및 제2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봅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③ 연기수익자총회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위의 ②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 각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집합투자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5)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 10)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시행령 제2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재산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분배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

- 매한 판매회사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 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 제125조 각호의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87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5)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집합투자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17조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집합투자업자(www.bnkasset.co.kr)·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으로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그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위험지표의 공시

-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 분	내 용
<증권거래>	①선정시 고려사항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②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특정 펀드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펀드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은 다음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는 등 제한이 따름] 가. 회사 경영관련 비용 나.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다. 마케팅비용 라.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등) 마. 펀드매니저는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	---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1) 매매대가 이익 :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가. 의무투자

투자주체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펀드 성과 공유를 통한 책임운용 강화로 투자자의 신뢰도 제고
투자승인일자	2026.06.12
투자시기	최초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을 따릅니다. 가.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회수. 다만, 고유재산 투자금이 집합투자기구 원본액의 5%미만인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하지 아니 할 수 있음 나. 1회에 회수하는 금액은 고유재산 투자금의 50% 이하로 하고, 1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다음 회차의 투자금을 회수 다.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주1)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가.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존속기한이 3년 미만인 집합투자기구로서 고유재산 투자금을 존속기한 동안 유지하는 경우
 - 나.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법 제19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 다.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로 편입되거나 영 제245조제5항에 따라 다른 모집합투자기구에 이전하는 경우
 - 라.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된 경우로서 변경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금을 납입하여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3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
- 주2) 투자기간이 경과하기 1개월 이전에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합니다.
- 주3) 상기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은 작성기준일 시점 내용이므로 관련 법규, 당사 내부 규정 또는 당사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추가투자 –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 6 부.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제출시 추가서류]

1. 집합투자계약(부속서류 포함)
2. 다음 각 목의 자와 체결한 계약서(부속서류 포함)의 사본
 - 가. 신탁업자
 - 나. 일반사무관리회사(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예비투자설명서
5. 간이투자설명서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단위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불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 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계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